

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

## 음료주 분류

(Classification of alcoholic beverages)  
 (국가기술감독국 1996.01.16 승인 1996.12.01시행)

### 서언

포도주·맥주는 국제적으로 원활히 유통되는 술 종류이다. 본 표준은 포도주 등 효과에 대한 국제 포도와 포도주국(O.I.V)이 공포한 《국제포도주실용기술공정법규》(1996년 판) 중 분류정의(分類정의) 관련부분을 인용하였다. 맥주는 통일된 국가표준과 법규가 없기 때문에 일부 맥주공업 발달국가의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.

브랜디(brandy)·위스키(whisky)·보트카(vodka) 및 럼주 또한 국제적으로 원활히 유통되는 술 종류들이기 때문에 1989년 5월 29일 유럽경제공동체(E.E.C)가 공포한 L160《독한술의 정의·설명 및 광고용어 총칙에 관한 법규》(EEC) No 1576/89호를 인용하였다.

백주·황주 등 중국전통 주종은 본 표준 제정 시 중국음료주공업의 발전역사와 최근 생산실정, 중국민족 특색을 밀접하게 융합하여 본 분류를 진행하였다.

조제주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각국의 생산공정기술과 품종이 차이가 매우 크므로 중국의 전통관습에 따라 분류를 진행하였다.

본 표준은 전국경공(經工)총회가 제출하였다.

본 표준은 전국식품발효표준화센터가 책임진다.

본 표준 입안기관은 중국식품발효공업연구소·사천 이빈 우량예(五糧液)주조공장·북경아시아쌍합오성맥주유한공사이다.

본 표준 주요 입안자는 티엔치징(田栖靜)·후스명(胡嗣明)·리우페이롱·두류준(杜綠君)·강용푸(康永璞)·두중(杜鍾)·궈썬광(郭新光)이다.

### 1. 범위

본 표준은 음료주의 유형별·정의와 종류를 규정하였다.

본 표준은 주정(알코올) 함량이 0.5%~60%(V/V)의 음료주에 적용한다.

## 2. 분류원칙

- 2.1 국제적으로 원활히 유통되는 술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적극적 등가 혹은 비등가 국제·국외 선진 표준을 적용하였다.
- 2.2 중국양조공업 현실과 결부하여 중국특색을 두드러지게 하였다.
- 2.2.1 모든 전통형 주종은 중국민족의 전통 관습을 존중하여 그 공통성을 과학적으로 결론 내려 분류하였다.
- 2.2.2 비교적 전체적으로 중국 현재 양주 업종 현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금후 양주공업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.
- 2.3 중국의 현재법규·관리조례 상호 적응을 견지하였을 뿐 아니라 그 합리성을 견지하고 현행 종류의 부정확한 부분을 수정하였다.
- 2.4 과학·계통과 연관성의 원칙을 견지하여 최선을 다해 완비하여 세부적인 것 보다 전체를 중시하였다.
- 2.5 주요하게 서로 다른 원료와 보조재료 및 생산 공정기술에 근거하여 분류를 진행하였다.

## 3 유형별

### 3.1 발효주 (釀造酒)fermented alcoholic beverages

범위 : 전분질(혹은 당질)원료를 발효 양조하여 만든 술에 적용한다.

정의 : 양곡·과일·젖 등의 원료로 주요하게 효모를 발효하는 등의 공정기술로 만든 것으로 주정 함량이 24%(V/V)의 음료주.

#### 3.1.1 맥주beer

맥아(麥芽)(특수 맥아 포함)를 주원료로 흡을 넣고 효모로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것, 기포가 발생하는 것, 저 알콜도수의 발효주(저 알콜 맥주 주 정도 제외).맥주를 크게 분류하면

- a) 숙성 맥주 : 바씨 멸균을 거친 맥주
- b) 생맥주 : 바씨 멸균을 거치지 않고 기타 방법으로 균을 제거하여 어느 정도 생물 안전성을 확보한 맥주
- c) 선(鮮)맥주 : 바씨 멸균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맥주

#### 3.1.1.1 담색(淡色, 얇은색) 맥주 : 색도가 5~14 EBC 단위의 맥주

원 맥주즙 농도에 따라 분류하면

- a) 고농도 담색 맥주 : 원 맥주즙 농도가 13%(m/m)보다 큰 담색맥주
- b) 중등농도 담색맥주 : 원 맥주즙 농도에 10%~13%(m/m)인 담색맥주
- c) 저농도 담색맥주 : 원 맥주즙 농도가 10%(m/m)보다 작은 담색맥주

## 3.1.1.2 농색(濃色, 짙은색) 맥주 : 색도가 15~40 EBC 단위의 맥주

원 맥주즙 농도에 따라 분류하면

- a) 고농도 농색 맥주 : 원 맥주즙 농도가 13%(m/m)보다 큰 농색맥주
- b) 저농도 농색맥주 : 원 맥주즙 농도에 10%~13%(m/m)인 농색맥주

## 3.1.1.3 흑맥주 : 색도가 40EBC 보다 큰 맥주

## 3.1.1.4 특종(특종)맥주 : 원·보조재료 혹은 생산공정기술 방면에 일부 큰 변화로 위에서 기술한 원래 맥주 맛을 변화시켜 독특하게 만든 맥주. 예를 들면

- a) 간(干)맥주(고 발효도 맥주) : 실제 발효도가 72% 이상인 맥주
- b) 저 알콜맥주 : 알콜농도가 0.6%~2.5%(V/V)의 맥주
- c) 밀(소맥)맥주 : 밀 맥아를 주원료로 하여 (전체 원료의 40% 이상 점유) 위에서 발효 혹은 하면에서 발효 양조한 맥주
- d) 혼탁맥주 : 완제품 중 일정량의 살아 있는 효모(酵母)균을 포함하고 있으며 혼합농도가 2.0~5.0인 EBC 단위의 맥주
- e) 얼음 맥주 : 양조과정 중 빙정(冰晶)화 처리를 한 맥주

## 3.1.2 포도주wine

신선한 포도와 포도즙을 원료로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발효 양조하여 제조한 것으로 알콜농도가 7%(V/V)보다 크거나 같은 발효주

술 중에 이산화탄소 함량과 가공 공정기술에 따라 평정(平靜)포도주, 기포 포도주와 특종 포도주 3종이다.

## 3.1.2.1 평정(平靜)포도주 : 20°C에서 이산화탄소 압력이 0.05MPa(0.5bar)의 포도주

주(酒) 중의 당 함유량과 전체 산에 따라 분류하면

- a) 간주(干酒) : 당 함유량이 4g/L 같던가 혹은 적던가 혹은 전체 당과 전체산(주석산으로 계산해서)의 차이가 2g/L과 같거나 적을 시 당 함유량이 최고로 9g/L의 포도주
- b) 반간주(半干酒) : 당 함유량이 간주(干酒)보다 크고 최고가 12g/L 혹은 전체 당과 전체산의 차이가 간주(干酒) 방법에 따라 확정하고 최고 당 함유 최고가 18g/L인 포도주.
- c) 반첨주(半飴酒) : 당 함유량이 반간주보다 크고 최고가 45g/L인 포도주
- d) 첨주(飴酒) : 당 함유량이 45g/L보다 큰 포도주

## 3.1.2.2 기포(起泡)포도주 : 20°C에서 이산화탄소 압력이 0.05MPa(0.5bar)보다 크거나 같은 포도주

- a) 술병 중의 이산화 탄소 압력이 0.05~0.25MPa(0.5~2.5bar)에 해당 될 시 저기포 포도주라 칭하고(혹은 포도사이다주), 이산화탄소 압력이 0.35MPa(3.5bar)크거나같을[병 용량이 0.25L보다 작고 이산화탄소 압력이 0.3MPa(3.0bar)]시 고기포 포도주라 칭한다.

b) 이산화탄소 전부 발생원인이 밀폐(병 혹은 발효 통 중) 자연발효 생산 한 원액 포도주 시 기포 포도주라 칭한다. 이산화탄소 인공 주입 시 이산화탄소 주입 기포포도주라 칭한다.

c) 고 기포 포도주는 당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
- 천연주 : 당 함유량이 12g/L보다 같거나 작은 기포 포도주
- 절간주(絶干酒) : 당 함유량이 천연주보다 크고 최고로 17g/L인 기포 포도주
- 간주(干酒) : 당 함유량이 절간주보다 크고 최고로 32g/L인 기포 포도주
- 반간주(干酒) : 당 함유량이 간주보다 크고 최고로 50g/L인 기포 포도주 · 첨주(括酒) : 당 함유량이 최고로 50g/L인 큰 포도주

### 3.1.2.3 특종(特種)포도주 : 특수 기술로 가공 제조한 포도주

- a) 이구(利口)포도주: 포도주 원액 중 브랜디를 침가하고 식용 정류 주정 혹은 포도주 정 및 포도즙 · 농축포도즙 · 초당(焦糖)함유 포도즙 등으로 알콜 농도가 15%~22%(V/V)인 포도주.
- b) 향 침가 포도주 : 포도주를 기본술로 하여 방향 식물을 침전(혹은 침가하여 얻은 채취물)로 제조한 것으로 알콜 농도가 11%~24%(V/V)인 포도주.

### 3.1.3. 과일주 fruit wine

신선한 과일 혹은 과일즙을 원료로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발효 제조하여 만든 것으로 주정 농도가 7%~18%(V/V)인 발효주

#### 3.1.3.1 명명규칙

과일주는 반드시 원료 과일에 따라 명칭을 명명하여야 하고 포도주와 구별하여야 한다. 한 종 과일을 원료로 사용 시 해당 과일 명칭을 명명한다.

예를 들어 딸기주 · 감귤주 등. 두 종 혹은 두 종 이상의 과일을 원료로 사용 시 용량 비례가 가장 큰 과일 명칭을 명명한다.

#### 3.1.3.2 종류

포도주의 분류방법을 참조하여 분류하면 평정(平靜)과일주 · 기포 과일주와 특종 과일주 세가지 류(類)로 나눈다.(동 3.1.2 조)

평정 과일주는 당과 전체 산 함량으로 분류하여 간(干) · 반간(半干) · 반첨과 첨가주로 분류한다.(동 3.1.2.1조)

기포 과일주는 병의 압력에 따라 고기포 과일주 · 저기포 과일주 혹은 과일사이다주로 분류한다.(동 3.1.2.2조)

#### 3.1.4 황주 Chinese rice wine

쌀 · 시장 · 보리 · 흑미 등을 원료로 누룩 · 효모 등 당화(糖化)발효제를 첨가하여 발효 숙성하여 만든 발효주.

원료에 따라 쌀류와 비쌀류로 나눈다.

## 3.1.4.1 쌀류 황주: 첨가하는 누룩에 따라 보리누룩과 쌀누룩으로 나눈다.

주(酒) 중의 당 함유량에 따라 다시 나눈다

- 간주(干酒) : 당 함유량이 10g/L보다 작은 황주
- 반간주(半干酒) : 당 함유량이 간주보다 크고 최고로 30g/L까지인 황주
- 반첨주(半搗酒) : 당 함유량이 반간주보다 크고 최고로 100g/L까지인 황주
- 첨주(搗酒) : 당 함유량이 반첨주보다 크고 최고로 200g/L인 황주
- 농도가 짙은(濃)첨주 : 당 함유량이 200g보다 큰 황주

## 3.1.4.2 비쌀류 황주: 첨가하는 누룩 종류에 따라 보리누룩과 쌀누룩으로 나눈다.

주(酒) 중의 당 함유량에 따라 다시 나눈다

- 간주(干酒) : 당 함유량이 10g/L보다 작은 황주
- 반간주(半干酒) : 당 함유량이 간주보다 크고 최고로 30g/L까지인 황주
- 반첨주(半搗酒) : 당 함유량이 반간주보다 크고 최고로 100g/L까지인 황주
- 첨주(搗酒) : 당 함유량이 반첨주보다 크고 최고로 200g/L인 황주
- 농도가 짙은(濃)첨주 : 당 함유량이 200g보다 큰 황주

## 3.1.5 기타 발효주 other fermented alcoholic beverages

위에서 언급한 4종 이외의 발효주

## 3.2 증류주 distilled spirits

- 범위 : 전분질( 혹은 당질)원료로 발효 증류 양조하여 만든 술에 적용한다.
- 정의 : 양곡 · 고구마 · 과일 등을 주원료하여 발효, 증류, 숙성 회석하여 만든 술로 알코올 함량이 18%~60 %(V/V)인 음료주.

## 3.2.1 백주 Chinese spirits

수수 등 양곡을 주원료로 하여 대곡(누룩, 大曲) · 소곡(누룩, 小曲) 혹은밀기울 및 술 누룩 등 당화(糖化) 발효제로 찌고 당화(糖化) · 발효 · 증류 · 숙성 회석하여 제조한 증류주.

생산 공정이 다른 것에 따라 분류하면

## 3.2.1.1 고태법(固態法) 백주 : 고태 당화(糖化) · 고태 발효 및 고태 증류의 전통적 공정으로 양조하여 만든 백주

누룩의 종류에 다시 분류하면

- 대곡주 : 대곡(누룩, 大曲)을 액화 발효제로 양조하여 만든 백주
- 소곡주 : 소곡(누룩, 小曲)을 액화 발효제로 양조하여 만든 백주
- 밀기울 주 : 밀기울을 당화제로 하여 술누룩을 첨가 발효 양조하여 만든 백주
- 혼곡(혼합 누룩)주 : 대곡 · 소곡 혹은 밀기울 등을 당화 발효제로 하여 양조하여 만든 백주

e) 기타 당화제 주 : 당화 효소를 당화제로 하여 양주(釀酒) 효모(활성 간 효모, 생향〈生香〉효모)를 발효 양조하여 만든 백주

3.2.1.2 반고태법(半固態法) 백주 : 고태(固態) 균 배양·당화, 물을 회석한 후 액체 상태 하에서 발효·증류하는 전통기술로 양조하여 만든 술

3.2.1.3 액태법(液態法) 백주 : 주요하게 액태 당화, 액태 발효, 액태 증류하여 제조한 백주

a) 전통액태법 백주 : 대미(大米)·당밀 등을 원료로 액태 하에서 당화 발효제를 첨가하여 당화와 발효를 함께 하여 액태 증류로 양조하여 만든 백주

b) 훈제향 백주: 액체법으로 생산한 식용 주정을 술 제조의 기초로 하여 고체법으로 발효한 훈제향(혹은 특별히 제조한 향)을 이용하여 제조한 백주

c) 고체 회석 백주: 액체법으로 생산한 식용 주정을 술 제조의 기초로 하여 고태법을 이용 백주를 회저어 조제하여 제조한 백주

d) 조향(調香)백주 : 액체법으로 생산한 식용 주정을 술 제조의 기초로 하여 향, 맛을 나타내는 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백주

아래에 하나 하나 언급한 제품은 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.

### 3.2.2 브랜디brandy

신선한 과일 혹은 과즙을 원료로 하여 발효·증류·저장·배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알콜 농도가 38%~44%인 증류주.

서로 다른 원료에 따라 분류하면

3.2.2.1 포도 브랜드(약칭 브랜디) : 포도즙·잼·나무껍질을 원료로 발효·증류를 거쳐 상수리나무(오크)통에 저장 최소한 2년 이상 숙성시킨 브랜디.

3.2.2.2 과일 브랜드 : 신선한 과일을 원료로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발효 혹은 식용주정(혹은 기타 주)을 사용 침전하여 증류 제도한 브랜디로 브랜디 명칭 앞에 과일명을 명기해야 한다.

### 3.2.3 위스키 whisky

맥아·곡물을 원료로 당화·발효·증류·저장·배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알콜농도가 40%~44%(V/V)인 증류주

원료가 다른 것 따라 분류하면

3.2.3.1 맥아(麥芽) 위스키 : 전부 보리 맥아를 원료로 하여 당화·발효·증류를 거쳐 상수리나무(오크)통에 저장 최소한 3년 이상 묵힌 것으로 원료와 가공 향료·맛을 가지고 있는 위스키

3.2.3.2 곡물 위스키 : 각 종 곡물(예를 들어 겹은 호밀·밀·보리 맥아)를 원료로 하여 당화·발효·증류를 거쳐 상수리나무(오크)통에 저장 최소한 3년 이상 숙성시킨 것으로 원료와 가공 향료·맛을 가지고 있는 위스키

3.2.3.3 조제 위스키 : 각 종 개별 위스키(맥아 위스키·곡물위스키)를 일정 비례로 혼합 조제하여 만든 위스키

### 3.2.4 보드카 vodka

곡물·감자, 고구마류 혹은 당밀 등을 원료로 발효·증류한 식용주정을 특수정제가공 공정을 거쳐 제조한 것으로 알콜농도가 38%~40%(V/V)의 증류주

### 3.2.5 럼주 rum

사탕수수즙 혹은 당밀 등을 원료로 발효·증류를 거쳐 상수리나무(오크)통에 저장하여 최소 2년 이상 숙성시킨 것으로 알콜농도가 45%~55%(V/V)의 증류주

### 3.2.6 기타 증류주 other distilled spirits

상술한 증류주 이외의 증류주

## 3.3 배합 제조주(노주) integrated alcoholic beverages

범위: 각 종 재(再) 제조주에 적용

정의: 발효주, 증류주 혹은 식용주정을 주(酒)원료로 식용보조재료 혹은 식용첨가제를 첨가하여 혼합·혼합 혹은 재가공한 것으로 그 주(酒)원료 본래의 성질을 변하게 한 술

첨가물의 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

### 3.3.1 식물류 배합 제조주(식물류 노주) integrated alcoholic beverages from plants

식용식물의 꽃·잎·뿌리·줄기·열매를 향 원료 및 영양원(營養源)으로 하여 재가공을 거쳐 제조한 것으로 확실한 식물향 및 유효성분을 지닌 배합 제조주

### 3.3.2 동물류 배합제조주(동물류 노주) integrated alcoholic beverages from animals

식용동물(피〈皮〉, 뿔, 뼈, 장기〈臟器〉 등을 포함) 및 그 제품을 향원료 및 영양원으로 하여 재가공을 거쳐 제조한 것으로 동물의 유효성분을 지니는 배합제조주

### 3.3.3 동·식물류배합제조주(동·식물류노주) integrated alcoholic beverages from plants and animals

동물과 식물의 유효성분을 함께 이용하여 제조한 술

### 3.3.4 기타류배합제조주(노주) other integrated alcoholic beverages

상이한 주종(酒種)을 직접 혼합·배합하거나 혹은 과즙·식품첨가제·이산화탄소를 첨가하여 재 제조한 술